KOSHA GUIDE

D - 68 - 2020

파괴핀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20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전남대학교 장 희
- O 제 · 개정 경과
 - 2020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(제정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- KS B 6750 "압력용기 설계 및 제조일반 ", 2004 (2017확인)
 - ASME Section VIII, Division 1. 2019 Edition
 - API RP 520, "Sizing, Selection, and Installation of Pressure relieving Devices in Refineries", 2014
 - ISO 4126-3,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Part 3: Safety valves and bursting disc safety, 2006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20년 12월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파괴핀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파괴핀 단독 및 안전밸브와 파괴핀장치의 직렬설치에 필요한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되는 좌굴형 압력방출장치로서 설정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.1 MPa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안전밸브 (Safety valve)"이라 함은 입구 쪽의 압력이 일정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스프링이 작동하면서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 압력 이하가 되면 다시 정상상태로 복원되어 유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진 밸브를 말한다.
 - (나) "파괴핀장치 (Buckling pin)"라 함은 입구 측의 정압력 또는 차압으로 작동되며, 압력유지부재를 지지하는 파괴핀의 하중 지지부가 작동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되닫힘되지 않는 압력배출장치이다.
 - (다) "파괴핀"이라 함은 파괴핀장치에서 힘을 받아 작동되는 구성품으로서, 그 단면 적은 원형형태로 제한되지 않는다.
 - (라) "파괴핀 본체 (Breaking pin housing)"라 함은 압력유지부재를 둘러싸는 구조물이다. 하우징 재료는 이 규격에서 사용이 KS규격에서 허용된 재료 및 ASME Section Ⅱ 등에서 나열된 재료이어야 한다.
 - (마) "설정압력 (Set pressure)"이라 함은 운전 중에 안전밸브가 열리도록 설정한

안전밸브 입구 측에서의 압력을 말한다.

- (마) "최고허용압력 (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, MAWP)"이라 함은 용기의 제작에 사용된 재질의 두께 (부식여유 제외)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용기 상부에서의 허용 가능한 최고의 압력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주요 물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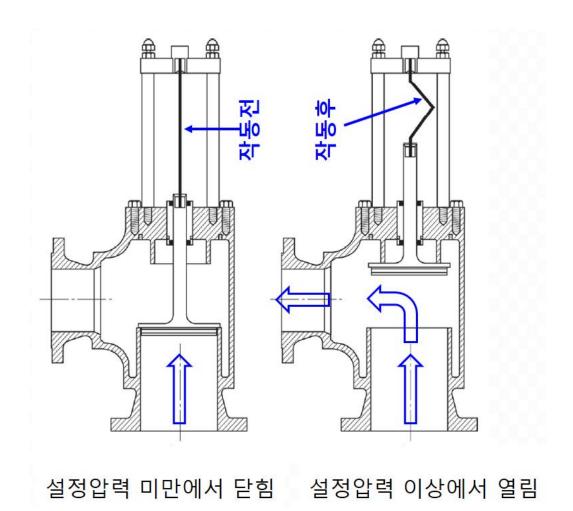
4. 파괴핀장치 등

4.1 파괴핀장치 구조

- (1) 파괴핀장치는 다음 <그림 1>과 같이 입구 쪽 정압력 또는 차압으로 작동되며, 압력유지부재를 지지하는 파괴핀의 하중 지지부가 작동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되닫힘되지 않는 압력배출장치이다.
- (2) 파괴핀장치의 본체는 압력유지부재를 둘러싸는 구조물이다.

4.2 일반 사항

- (1) 규정된 파괴핀 설계온도에서 설정압력과 정격배출용량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.
- (2) 파괴핀장치의 설계온도는 비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및 파괴핀이 작동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핀의 온도이어야 한다.
- (3) 설정압력 허용오차는 표시된 설정압력이 300 kPa 이하인 경우 ±15 kPa, 300 kPa 을 초과할 경우 ± 5 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

<그림 1> 파괴핀장치 단면도

- (4) 유동 저항법으로 인증한 파괴핀장치의 배출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 - (가) 파괴핀장치에서 배출되는 배출물질은 파열판과 같이 대기로 바로 배출할 수 있다.
 - (나) 압력용기 노즐 입구로부터 관 지름의 8배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.
 - (다) 파괴핀장치로부터 배출배관 길이는 배관지름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 - (라) 입구 및 배출 배관의 공칭지름이 해당 장치의 각인된 공칭지름(DN) 이상일 경우에 압력배출계통의 계산한 배출용량은 여러 매체에 대한 이론적 유동계산식에 배출계수 K에 0.62를 곱하여 구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 - (마) 이론적 유동 계산식에서 파괴핀의 실제 방출면적 A는 파괴핀장치 제조자가 규정한 최소유효 유동면적이어야 한다.

- (바) 압력 배출 계통의 계산 용량은 전체 계통의 유동 저항을 해석하여 결정해도 된다. 이 해석에서는 파괴핀장치, 압력용기의 출구 노즐, 엘보우, 티, 리듀서 및 밸브를 포함한 배관 및 배관 구성품의 유동 저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이 계산은 배관 계통을 통한 유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적합한 공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 이 방법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수용하기 위해, 계산된 배출 용량에 0.90 이하의 계수를 곱해야 한다.
- (5) 파괴핀장치를 단독으로 압력방출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배출용량은 그 장치에 표 시된 인증 용량 및 계통 유체와 파괴핀장치 전후의 계통 구성품의 특성을 고려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(6) 파괴핀장치는 인증용량을 명판에 표시하여야 한다.

4.3 파괴핀장치에 대한 최소요건

- (1) 일관된 작동과 기밀성 보장에 필요한 구조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(2) 파괴핀장치의 시트는 요구되는 위치에서 시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없도록 파괴핀 장치의 본체에 고정시켜야 한다.
- (3) 괴핀장치를 설계할 때는 침전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
- (4) 입구 및 출구에 나사 연결부가 있는 파괴핀장치에는 가동부품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, 렌치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(5) 파괴핀장치의 배출구 쪽에 액체가 모일 수 있도록 설계된 파괴핀장치의 경우, 아래 (6)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, 파괴핀장치의 액체가 모일 수 있는 최저 위치에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설계 또는 적용상의 이유로, 위 (5)에서 요구하는 배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,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 - (가) 장치에서 액체가 배출되지 않으며 장치의 배출구 쪽에 응축 액체가 형성되지 않는, 가스용도로만 이 장치를 사용한다.
 - (나) 장치의 배출구 쪽으로 액체 또는 다른 오염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장치에 덮개 또는 배출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① 배출배관은 압력배출장치의 배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② 배출배관은 배출구 쪽에 액체가 잔류하지 않도록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배출구는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장소에 배출시켜야 한다.
- ④ 배출배관은 압력배출장치의 배출용량을 감소 또는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.
- (다) 요구되는 다른 표시 외에 추가로 그 장치에 "가스 전용"으로 표시한다.
- (7) 교체하는 파괴핀은 파괴핀장치의 제조자가 제조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8) 파괴핀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.

5. 파괴핀장치의 설치방법 등

5.1 파괴핀장치의 설치방법

- (1) 파괴핀장치는 압력용기에 대한 압력 배출장치로 단독으로 설치 가능하다.
- (2) 압축성 유체 방출용 압력방출장치는 저장된 액체 위쪽의 증기 공간 내 압력용기에 연결하거나, 보호해야 할 압력용기 내 증기 공간에 연결된 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.
- (3) 압력용기와 압력방출밸브 사이의 모든 관, 관이음쇠 및 되닫힘되지 않는 압력방출 장치(설치한 경우)의 구멍은 최소한 압력방출밸브의 입구 면적을 가져야 한다. 이 상류 계통의 특성들은 압력 강하로 인해 방출 용량이 요구값 이하로 감소되지 않 거나, 압력방출밸브의 적절한 작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.
- (4) 압력용기 노즐은 압력용기와 압력방출장치 사이의 유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(5) 한 개의 연결부에 2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할 경우, 이 연결부의 입구 쪽 내부 단면적은 압력방출장치의 흐름을 제한하지 않는 크기이거나, 여기에 연결된 안전장치의 조합 입구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.
- (6) 파괴핀장치를 압력방출장치의 전단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.
 - (가) 파열판과 파괴핀을 직렬로 조합하여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는 압력용기의 설계 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 보다 10 % 또는 20 kPa 중에서 큰 값을 초과하여 압력 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- ① 여러 개의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고 압력을 설정하는 경우,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고허용압력 보다 16 % 또는 30 kPa 중에서 큰 값을 초과하여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압력용기가 화염 또는 예상하지 못한 다른 외부 열원에 노출될 수 있을 경우,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허용압력의 21 %를 초과하여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나) 파열판과 파괴핀을 직렬로 조합하여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의 배출용량은 안전 밸브의 표시 용량에 정격배출용량 계수 0.9를 곱하거나, 제조자가 제공하는 압 력방출장치의 용량을 적용할 수 있다.
- (다) 파괴핀장치와 안전밸브 사이의 공간에 압력계, 시험용 콕크, 프리 벤트 또는 적합한 압력검출 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라) 파괴핀이 작동된 후 파괴핀장치에 생기는 구멍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면적은 안전밸브 입구면적 이상이어야 하고, 안전밸브의 배출용량과 같은 유량을 배출 하는데 충분하여야 하고, 안전밸브의 적절한 기능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.
- (마) 파괴판장치의 설정압력은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90 % 이상이어야 한다.
- (7) 압력용기 내 압력이 직접 작용하여 개방되는 안전밸브의 출구 쪽에 파열판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.
- (8) 보호를 받는 기기로부터 안전밸브의 입구까지의 연결은 파괴핀장치의 영향을 포함한 안전밸브 입구까지의 압력강하가 그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의 3 %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짧아야 한다. 이 때 3 % 압력강하는 그 안전밸브의 최고배출압력에서 배관 등을 포함하여 그 조합장치를 통과하는 흐름상태에서 산정한다.
- (9) 조합장치의 출구와 대기 또는 배출장치 사이의 배출배관은 항상 적절하게 배출시켜야 한다.
- (10) 배출물질의 배출 중에 예상되는 반력을 흡수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배플 플 레이트(Baffle plate, 방해판)가 압력배출장치의 요구분출용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다면, 배출유체의 방향전화과 반동의 감소를 위하여 파열판 안전장치의 배출구에 장착할 수도 있다.
- (11) 조합형 안전장치의 공급자는 파괴핀장치와 안전밸브의 제조자가 제공하는 지침 서에 추가하여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감안한 조립 및 설치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.

(12) 안전밸브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만족시킨다면 파일럿 작동 안전밸브 전단 에 파괴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
5.2 파괴핀장치의 유지관리

- (1) 파괴핀장치는 디스크와 밸브시트 사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무나 프라스 틱 등의 탄성체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누설이 없어야 하다.
- (2) 파괴핀장치는 후단에 배압이 형성되면 오작동 위험이 있어 압력검출 지시계를 수시로 확인하여 배압이 형성되면 즉시 원인을 찾아서 개선시켜 배압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(3) 파괴핀장치는 주기적으로 내부의 부식, 이물질 누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다.
- (4) 파괴핀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파괴핀장치 제작자가 제공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5) 파괴핀장치는 관련법에서 정한 점검기간 내에 누설시험 등을 하여야 하고, 그 기록을 2년 이상 또는 다음 점검기간 중에서 긴 기간을 보존하여야 한다.

6. 파괴핀장치 표시

- (1) 파괴핀장치는 파괴핀장치 위에 또는 명판에 표시하여야 한다.
 - (가) 제조자의 이름
 - (나) 제조자의 설계번호 또는 형식번호
 - (다) 공칭지름
 - (라) 설정압력
 - (마) 유동방향
 - (바) 파괴핀장치에서 파괴핀 식별자
 - (사) 인증용량
 - (아) 인증된 장치의 유동저항에 대해 최소유효유동면적, 인증된 유동저항

- (자) 검사기관의 합격표시
- (차) 제조 연월일
- (카) 파괴핀에는 로트 번호, 핀의 작동 온도와 압력
- (2) 파괴핀장치와 조합 사용하는 압력 배출장치는 파괴핀장치 위에 또는 명판에 표시하여야 한다.
 - (가) 안전밸브 제조자 이름
 - (나) 안전밸브 설계번호 또는 형식번호
 - (다) 파괴핀장치 제조자 이름
 - (라) 파괴핀장치 설계번호 또는 형식번호
 - (마) 파괴핀 용량 또는 안전밸브와 파괴핀 조합용량계수
 - (바) 검사기관의 합격 표시